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심사경과

1. 심사일정

- 가. 제 안 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4. 12. 28
 다. 상정일자 : 95. 1. 24
 라. 의결일자 : 95. 1. 24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사회국장

나. 내 용 :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보호비용을 대불받고자 할 때 대불금의 상환 의무조건에 대한 사항으로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91. 10. 10 보사부령 제883호로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10만원 미만을 대불한 자는 기존에 4회에서 3회로 1회가 줄어들게 되며, 동 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및 3호도 의료보호비용 대불에 대한 상환 의무조건을 확대 시행하는 조치임.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보사부령이 91. 10. 10 개정되었다면 지금까지 법비용은 어떻게 하여 왔는지?	○ 조례만 개정하지 않았다 뿐이지 업무상에는 보사부령 개정 이후 즉시 적용하여 오고 있음.

4.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5. 수정안 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 없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0
의결 년 월 일	95. 1. 27 (제34회)

제출년월일 : 1994. 12. 2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의료보호비용 대불에 대한 상환의무 조건의 확대시행으로 주민편의 행정도모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개정(1991. 10. 10 보건사회부령 제883호)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대불금액 10만원 미만은 3회 분할상환(안 제7조제1항제1호)
- 대불금액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분할상환(안 제7조제1항제2조)
- 대불금액 30만원 이상은 12회 분할상환(안 제7조제1항제3호)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①(생략)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①(현행과 같음)		
1. 10만원 미만은 4회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은 20만원 미만은 8회		2. 10만원 이상은 30만원 미만은 8회		
3. 20만원 이상은 12회		3.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5. 1. 16.
- 나. 제안자 : 부 천 시 장
- 다. 회부일자 : 1995. 1. 17.
- 라. 상정일자 : 1995. 1.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94. 3. 16)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이 94. 12. 31일자로 제정되어,
- 95. 1. 1일부터 부천시 직제규칙이 폐지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 기구의 설치기준
 - 시의 실·국·과 설치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
 -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 직제규칙 제정